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94,567,908	20,837,037
일반회계		673,965,364	20,218,961
특별회계		20,602,544	618,076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602,544	618,076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7,592,865	227,786
	주차장 특별회계	10,697,572	320,92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42,189	16,266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173,277	35,198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256,515	7,695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40,126	10,20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800,913천원(일반 5,000,000천원, 재해·재난목적 5,227,413천원, 내부유보금 573,5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특별교부세(금), 특정목적기부금 등 이전재원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다.

※ 예산서 자원 표기

[국] 국고보조금, [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 기 금

[특] 특별교부세, [별] 특별조정교부금, [시] 시비보조금, [구] 자체재원